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73	윤준병의원	2024.6.18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23	임미애의원	2024.12.1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2.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28	안호영의원	2024.12.1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94	이원택의원	2025.1.22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
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
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
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 간 균형 확
보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
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나.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라.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25조의2).

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운용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사.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은 4개 회계연도에 대해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5조의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6호 중 “간부직원”을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를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을 “조합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정관으로”를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설립이나”를 “설립 또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을 “직전”으로,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9조제1항제12호”를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9조제1항제12호”로, “제57조제2항”을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54조제2항 중 제2호를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 해임 요구와 총회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로,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후단 중 “제52조제3항”을 “제43조제3항제6호 중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25조제6항 중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2제7항 중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를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 또는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4조제5항 전단 중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대손보전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제134조제5항”을 “제1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 중 “회원에게”를 “회원에게 제134조의6에 따른 도
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회원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
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2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61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제5항 중 “상임인 조
합장”은 “조합장”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공포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4조의6, 제134조의7, 제134조의8, 제142조제2항, 제161조의7: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 제4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8

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u>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u> <u>· 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u> <u>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u> <u>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u> <u>조합을 말한다.</u>
4. (생 략)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력) (생 략) <u><신 설></u>	4.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u> <u>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u> <u>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u> <u>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 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 ----- ----- ----- -----.

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1. (생략)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
합장의 선출

3.·4. (생략)

② (생략)

제43조(이사회) ① · ② (생
략)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간부직원의 임면

7. ~ 13. (생략)

④ · ⑤ (생략)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5항-----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

7. ~ 1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
시켜-----진술하게 할-----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
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
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략)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삭 제>

<삭 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 ⑩ (생략)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
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
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
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
용한다.

1. ~ 6. (생략)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9. (생략)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삭 제>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

-----조합장은-----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금고 이상의 형-----

8. 9. (현행과 같음)

10. -----
-----조합원 신분을 2년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
니하거나 정관으로-----

---설립 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5조제5항----

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생략)

③ · ④ (생략)

제57조(사업) ① (생략)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조합, 중앙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략)

<신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

③ -----

-----다른 조합, 중앙회-----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7조(준용규정) ① -----

· 제3항 ·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가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가목·사목·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생 략)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

-----.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① -----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
까지-----

-----.

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
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
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
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
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
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
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
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
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
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
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
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
사목·차목, 제3호가목·사목·
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
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
업은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
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하는 방
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
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9조
제1항제12호-----

-----제51조제
4항 중 “제45조제5항”을 “조합
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
로, 제54조제2항 중 제2호를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에 해임 요구에 따라 총
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
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
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로, 제57조
제2항-----

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
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
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생략)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

② (현재와 같음)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

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
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
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
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
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
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
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
금”으로 본다.

②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생략)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생략)

-----제43조제3

항제6호 중 “준법감시인 및 간

부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제5

2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진술하게 할----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진술하게 할---

-----.

⑧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
회를 둔다.

1. ~ 4. (생략)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
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
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인사추천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
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
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하며-----

1. ·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
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
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
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
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
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
개 모집 또는 조사 업무를 전

<신 설>

④ (생 략)

제134조(사업) ① ~ ④ (생 략)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 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 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4조(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손보전자
금-----
-----.

-----.

<삭 제>

<신 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
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를 경감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구성·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
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
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
농상생지원자금을 구성·운용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
의 구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

<신 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	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
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구성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136조의2제1항-----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구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
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
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
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
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
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
합지원자금 구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
원조합지원자금 구성·운용계
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
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
를 둔다.

<신 설>

<신 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략)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 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원에게 제134조의6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회원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
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
 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
 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
 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
 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
 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
 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
 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

 -----.
 ③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

 -----1
00분의 3-----

 -----.

 -----.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략)

<신 설>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
선거에 관여한 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
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

-----,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2조(벌칙) ① -----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
에 관한 특례) ① ~ ⑦ (현
행과 같음)

⑧ _____

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 3. (생략)

[illegible]

-----준용하되, 제5항
중 “상임인 조합장”은 “조합
장”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